

석유 최고가격제 추진방안

2026. 3. 12.

산업통상부

순 서

I . 가격 동향 1

II . 최고가격제 계획[안] 1

III . 향후 계획 4

I. 가격 동향

- 국제가격은 중동상황 발생(2.28) 후 정세불안 장기화에 대한 수급 우려로 배럴당 100불 내외 상승, 현재는 90불 내외 수준 보합

* 3.9 Brent유 장중 100불 돌파, 종가(런던ICE 선물) 기준 3.9 98.96 → 3.11 91.98불

-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, IEA 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향후 가격 예측 난항

- 국내가격은 상황 발생 후 휘발유 리터당 200원, 경유 300원 이상 상승

* 2.27 → 3.12(07:30) : (휘발유) 1,693원/L → 1,903원/L, (경유) 1,592원/L → 1,924원/L

- 정부의 시장 안정화 메시지로 상승 폭 둔화*, 하락 전환(3.11)

* 휘발유 전일비 가격 상승률(%) : ^(3.1)0.18 → ^(3.3)1.2 → ^(3.5)3.2 → ^(3.7)0.9 → ^(3.9)0.4 → ^(3.11)△0.1

II. 최고가격제 계획(안)

〈 목표 및 설계 원칙 〉

【목 표】 ▲석유가격 안정, ▲시장왜곡 대응, ▲균등 부담

【3대 설계 원칙】

- ❶ 석유가격 안정: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석유가격 대응 목적으로 한시적 운영
- ❷ 시장왜곡 대응: 석유가격 비대칭성 대응, 시장가격 급등에 따른 정유사, 주유소의 과도한 이익 추구 행위 방지
- ❸ 균등 부담: 석유가격 상승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고르게 부담

① 최고가격 산정 방식

기본 산식

$$\square \text{ 최고가격} = \textcircled{1}\text{기준가격(주간 평균)} \times \textcircled{2}\text{변동률} + \textcircled{3}\text{제세금}$$

○ 기준가격: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

– 공급가격: 정유사가 주유소,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의 평균(석유회사에 주간단위로 보고)

– 중동상황 발생 전 평시(가격급등 전) 형성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활용 → 국내 가격 안정 효과 제고

○ 변동률: 국제 석유제품가격(MOPS*)의 변동 비율

*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(Mean of Platts Singapore)

○ 제세금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(휘발유·경유), 개별소비세(등유), 부가세 등

예 외

○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%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 가능

② 조정주기: 매 2주 단위로 재설정 원칙

○ 가격 안정효과, 유가 반영 시차(약 2주), 정부부담 등 종합 고려

* 매주 조정시 가격안정 효과 ↓, 1개월마다 조정시 유가 조정 시점의 변동폭 大

○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시, 조정주기 변경 가능

< 적용 개념도 >

구분		1차 최고가	2차 최고가	3차 최고가
시행일자		금주 내 발표	2주후	4주후
최 고 가	기준가격	기준가격	1차 최고가격 ^(제세금 外)	2차 최고가격 ^(제세금 外)
	×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	× 상승률	× 상승률	× 상승률
	+ 제세금			
		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, 부가가치세		

③ 적용품목: 보통휘발유, 경유, 등유

-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
- 필요시 적용품목은 추가 가능

④ 적용대상: 정유사의 주유소 등 공급가 대상, 주유소 판매가 제외

- 주유소 판매價는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내고, 경영전략(고마진 소량판매 등), 운영방식(예: 셀프)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 규제 곤란

⑤ 수출제한

- 최고가격 적용품목에 대해서 국내외 시장간 가격차이로 인해 국내 공급물량을 해외 수출로 과도하게 전용하는 행위 방지 목적
- 원칙적으로 2025년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의 100% 수준으로 제한, 필요시 조정 가능

⑥ 사후정산

- ▲손실 보전, ▲정유사의 입증책임, ▲분기별 정산 등 3가지 원칙에 의거 정부 재정으로 지원

- 정유사는 각 회사별로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하여 손실액을 자체 산정,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산 요청
- 정부는 회계, 법률, 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‘최고액 정산위원회’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 후 정산

7 석유시장 모니터링

- 주유소 판매가격을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,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
-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* 등 독립적 기관을 활용하여, 판매 가격 및 매입·판매·수출 등 물량 흐름을 모니터링

* 과거 2010~2024년까지 소비자단체인 에너지·석유시장감시단 주관으로 정유사 공급가, 주유소 판매가격을 매주 모니터링하여 보도자료 등 배포 경험

- 가격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 대상, 공표, 조사,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엄정한 관리체계* 운영

- * ①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 상위 주유소 대외 공표
 ② 2차례 공표대상 포함시 담합·품질·매점매석·세무 등 범부처 전방위 조사
 ③ 조사 결과에 따라, 과태료·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대응

III. 향후 계획

1 (고시 제정) 금주 내 가격 고시 예정

* 『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』 제정·시행

2 (취약계층 지원) 자영업자,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지원 방안 별도 검토